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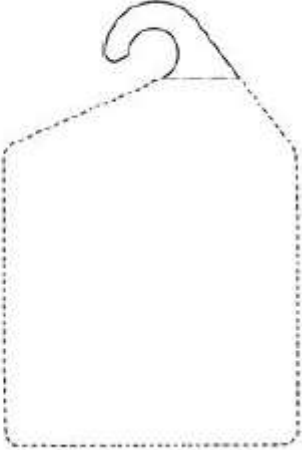
주방용품 도마 디자인 모방 분쟁 - 공지된 디자인 요소의 결합 용이성, 공지디자인 자유

실시 판단기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2060 판결



1. 사안의 개요

| 이 사건 등록디자인 | 피고 제품 1 | 피고 제품 2 |
|---|---|--|
|  A line drawing of a cutting board with rounded corners and a small handle on the left side. |  A photograph of a dark-colored cutting board with a vertical handle, mounted on a white base. |  A photograph of a light-colored cutting board with a vertical handle, mounted on a white base. |

| 선행디자인 1 | 선행디자인 2 |
|---|--|
|  |  |

| 선행디자인 1 (을 제1호증) | 을 제5호증 | 을 제6호증 | 을 제7호증 |
|---|---|--|---|
|  |  |  |  |
| 을 제8호증 | 을 제9호증 | 을 제10호증 | 을 제11호증 |
|  |  |  |  |

2. 특허법원 판결요지 - 디자인모방 권리침해 인정, 공지디자인 자유실시 부정

(1) 침해자 피고 주장 요지 - 등록디자인의 역 C자 형태의 고리와 U자 형태의 홈이 각각 선행디자인 1, 2에 개별적으로 공지되었으니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2) 특허법원 판단 요지 -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피고 제품 1, 2에서 발견되는 공통점 ⑤의 역 C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⑥의 U자 형태의 홈의 결합에 따라 형성되는 본체부 상단의 형상은 그 디자인의 구조적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분이므로, 피고가 지적하는 것처럼 공통점 ⑤의 역 C자 고리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2에, 공통점 ⑥의 U자 홈의 형상이 선행디자인 1에 각각 나누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개별 공지的事实을 들어 공통점 ⑤의 역 C자 형태의 고리와 공통점 ⑥의 U자 형태의 홈이 결합한 본체부 상단의 형상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할 수는 없다.

(3) 피고의 주장은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서 법리에 어긋나는 독자적 견해에 불과함은 마찬가지이다.

(4) 법리 - 등록디자인이 신규성이 있는 부분과 함께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따라서 등록디자인과 그에 대비되는 디자인이 공지 부분에서는 동일·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에서 서로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다202939 판결 등 참조).

(5) 이는 디자인권이 물품의 신규성이 있는 형상, 모양, 색채의 결합에 부여되는 것이므로, 공지의 형상과 모양을 포함한 출원에 의하여 디자인등록이 되었다 하더라도 공지 부분에까지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7후1900 판결, 2004. 8. 30. 선고 2003후762 판결, 2012. 4. 13. 선고 2011후3469 판결 등 참조).

(6) 위와 달리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모양이 공지에 속하는 것이라도

이것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는 이를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5후2922 판결 참조).

(7) 요컨대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복수의 선행디자인에 나누어 공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의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그 디자인권의 권리범위를 정할 때 위와 같이 등록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개별적으로 공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요소들이 결합한 형태까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된다.

(8)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등록디자인과 대비할 것도 없이 그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6후878 판결 등 참조).

(9) 그런데 위와 같이 공지디자인들의 결합에 따라 쉽게 실시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 그 공지디자인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

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 261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디자인은 그와 같은 결합에 쉽게 도달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24. 1. 10. 선고 2022나2060 판결

지재권분쟁, 침해대응, 형사/민사소송, 손해배상, 심판소송, One-Stop 대응, A~Z 수행

T. 02-591-0657 E. kkh@kasanlaw.com H. www.kasanlaw.com